

94.12.6

“삶의 질 끌어올리자” 시민운동

참여연대, 국민연금 기금 손실 손해소송·보시장관 고발

의료·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공익소송 △연구 및 공청회 △법안정비 △사회복지예산 증액 △의정감시 △국민홍보 등 6가지의 구체적인 운동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의 첫 단계로 이날 오후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기관에 대출해주도록 한 보사부 예규와 관련해 서상목 보사부장관과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동양증권 사원 오의균씨 등 3명이 낸 소장에서 원고들은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8조4천억원 중 공공부분과 복지부분에 3조4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무책임한 운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금 수익손실에 대해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선경증권 사원 양영철씨는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보사부 예규)은 의료보험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각 조항 고유재산의 처분권한을 침해하고 행사를 방해한 보사부장관 등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성한용 기자

□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뭘 담고 있나

구체적 운동방식 ‘공익소송’ 눈길

내년 노령수당·생활보호대상자·육아휴직 등 소송계획

성한용 기자

참여연대가 5일 시작한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은 김영삼 대통령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세계화’와 ‘경쟁력’을 부르짖고 나선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눈길을 끈다.

정부가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면서도 사회복지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이 단체는 매우 세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90년대 한국사회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일관된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도외시한 세계화, 국제화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생활 최저선의 확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동의 특색으로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를 소수 절대빈곤층의 문제가 아

니라 중산층의 기초적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지역·계층간 갈등에 대비해 사회통합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셋째, 각종 범죄의 사회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활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동방식 가운데는 공익소송이 단연 눈길을 끈다.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공익소송은 삶의 질과 관련해 낙후된 측면을 공론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연금기금 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보사부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지역의료보험료의 보험료 부과분 취소 심사청구 소송과 국민연금법 기본연금액 5% 인하 위법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노령수당 확대 청구소송 △생활보호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학교급식 확대 소송 △공공보육시설 확대 소송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국민생활 최저선과 관련된 것에 대한 공약이행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다. 95년에는 정부가 충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규약에 근거해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주도로 제기되는 각종 공익소송은 법원과 검찰 등 재조 법조계의 호응이 있을 경우 국가정책 방향을 사실상 뒤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인 폭발력은 상당한 것이다.

특히 젊은 법관과 검사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법적 극주의’가 이번 공익소송을 계기로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사법적극주의는 “적극적인 사법활동으로 사회정의 구현하고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원칙으로,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진보적 법조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